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95호
2. 발 의 자 : 장인홍 의원 외 12명
3. 발의일자 : 2018. 8. 16.
4. 회부일자 : 2018. 8. 21.

## II . 제안이유

-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청렴성 제고와 위법·부당한 사항의 개선,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을 위하여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III . 주요내용

1. 청렴시민감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2.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을 규정함(안 제3조).
3.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와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4.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8.8.24~8.31): 의견 없음.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8년 8월 16일 장인홍 의원 외 12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95호로 발의되어 2018년 8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목적으로 ‘청렴시민감사관’에 관한 구성과 직무범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부적 부패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현황과 개요

-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재 28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상근: 3명, 비상근:25명) 임용·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sup>1)</sup>
- 현재 교육청의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공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 부패, 위법·부당 행정행위 및 공무원의 권력 오·남용 등)을 접수하여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주요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요구 또는 권고를 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간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2017~2018년 청렴시민감사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현행 법령에서 ‘시민감사관’ 또는 ‘청렴시민감사관’이라는 용어를 직접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외부전문가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1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음. 당초에는 30명 내외의 비상근의 위촉직 시민감사관만을 운영하다가 2016년 1월 12일 동 규칙을 전부개정하여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함.

관 업무 실적'은 [별첨] 참고).

- 그동안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2015~2016년: 17위, 2017년: 12위) 교육행정에 있어 대외적인 신뢰도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3월 7일 '2018 서울교육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하였는바, 동 방침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이 주도하는 공익제보센터 운영 활성화, 그리고 주요 감사시 1명 이상 청렴시민감사관의 필수 참여 원칙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운동부와 현장학습에 있어서도 청렴시민감사관을 통한 '청렴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동 조례안이 현재 규칙으로 규정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자격, 임기, 신분보장, 직무 등을 상위규정인 조례로 규정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행정의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은 감사의 내실화와 교육청의 청렴도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나. 청렴시민감사관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조례 또는 규칙, 즉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2)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 여기서 “법령의 범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무의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제처 18-0025, 2018.3.13.).
-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령에 따른 직접적인 위임 없이 교육감의 권한에 속한 감사 사무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감사기구의 장(감사관)과 감사담당자(감사관 소속의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에게 위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6조<sup>3)</sup>와 별도의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예시)>**

구분	근거조문	내용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의 위임·위탁</li> <li>• 소속공무원의 복무, 징계, 교육훈련</li> </ul>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0조 제74조제1항 제81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인계</li> <li>•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 사무의 처리</li> <li>• 이장의 임명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li> </ul>
지방재정법	제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징수</li> </ul>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격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합의제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37조제5항 제78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등 기타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li> <li>• 임용후보자 자격이 상실되는 훈련성적 기준</li> <li>• 제안제도의 운영</li> </ul>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38조제5항 제5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괄적인 규칙제정권</li> <li>•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li> <li>•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li> <li>• 신규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관한 사항</li> <li>• 특별임용요건의 세부사항 규정</li> <li>•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li> <li>• 임용시험 응시자격</li> </ul>

○ 이런 점에서 공공행정의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공공행정의 개선을 통한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교육감의 단순 사무집행을 위한 입법형식의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 보다는 동 제정조례안과 같이 법규성을 강화한 조례로 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교육행정을 포함한 모든 지방행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교육청) 사이에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을<sup>4)</sup> 준수해야 하는바,

법령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정하였고(감사의 외부전문가 참여 등), 감사 결과에서 밝혀지는 행정권한의 남용이나 회계부정 등이 침익적 행위로서 시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전국 시·도교육청 현황은 [별첨2] 참고).

## 나. 조문별 검토

○ 동 조례안은 목적(안 제1조)과 청렴시민감사관 정의(안 제2조)에 대한 총칙 규정을 비롯하여 구성과 자격(안 제3조), 임기와 신분보장(안 제4조), 직무 및 직위(안 제5조), 비밀유지 의무와 제척·회피(안 제6조 및 제7조)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구성과 연수, 인

4) 법치주의의 한 개념으로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력 및 예산 지원 등(안 제8조부터 제10조)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반적으로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및 운영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규모를 현행 30명 내외에서 50명 내외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력지원과 예산 확보 등의 측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끝으로 안 제5조제2항은 상근직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를 규정하면서 현행 규칙과 달리 제6호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 감사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에 따른 계약심사 업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제6절제3관의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에 따라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계약심사제도를 시행할 경우 동 업무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심사 업무를 감사관 소관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심사제도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것으로<sup>5)</sup> 일상감사와

5)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6),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제4조제2호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안 제5조제2항제6호의 계약심사 업무 소관을 감사관으로 하면서 이에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업무의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 추진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도 동일한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감사관-9250, 2018.8.28.).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6) 「서울특별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제4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함.

제4조(대상사업)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는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경우에만 일상감사를 실시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 해당 연도 주요 정책과제 중 신규로 포함되는 단위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  
2. 계약업무

가. 건당 추정금액 10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장기 계속공사 포함)

나.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설계 및 감리용역

다. 건당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제조)·용역

라. 별표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를 지명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마.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행하는 계약

바.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매각·매입 계약

3. 예산관리 업무 : 건당 20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관계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6조(감사담당자의 임용)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자가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 또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합의제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 5. 18.] [대통령령 제26241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9조(감사담당자의 자격)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담당자로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에서 2년 이상 근속하였거나 다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감사담당자로 임용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상훈법」, 「모범공무원 규정」, 「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첨1]

## 2017~2018년 청렴시민감사관 업무 실적

### 1. 상근시민감사관 업무실적

성명(직급) 임용기간	활동 실적<2017.01.01.~2018.8.27.>			
	제목	건수	실적	비고
오성숙 (공익제보센터장)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2017.01.01 ~ 2018.8.27. 현재	학교법인 하나학원 공익제보교사 '해임'처분 조사결과보고서		- 공익제보교사 '해임'처분 취소 요구	조사 및 보고서 작성
	학교법인 충암학원 인사운영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		- 신분상 조치 14명 - 임원취임승인취소 요구(8명)	감사 및 보고서 작성
	하나고 교장 직무대리의 위법적 임명에 대한 시정 조치 요청			조사 및 기안
	00고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		조사 및 보고서 작성
	00부속고 교사 금품수수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 기관 경고, 수사 의뢰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서울미고 공익제보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			조사 및 보고서 작성
	00중학교 교육과정 관련 민원조사 결과보고서		- 경고 2, 주의 1명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사립학교 교사 채용 관련 7개 사립고등학교 특정감사 실시		-	조사 및 결재
공익제보센터 운영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활동 -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철회 및 시정 요구 - 구조금 및 보상금 지원: - 공익제보교사 1인, 공립학교 특별 채용 지원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 하나고, 환일고, 동구마케팅고, 혜성여고, 송곡여고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철회 요구 및 현지 조치, 시정 권고 공문 발송  - 공익제보자 가운데 7인을 선정, 포상금 지급, 전국 최초로 공익제보자 1인에게 구조금 지급	검토 및 결재
	○ 민원 및 공익제보 사안 조사·감사 및 처리(상근시민감사관 활동)	2017년 187건 2018년 175건	- 2017년도 센터 자체 조사, 자체 처리, 이첩 및 감사팀 조사, 단순 상담 종결 등 187건 처리 - 2018년도 08. 20. 현재, 175건 접수 처리 중. 2017년에 비해 제보 건수 비약적 증가	검토 및 결재
	○ 고발 및 소송 업무	6건	- 동구학원, 충암학원 고발 및 소송 업무 지원 활동 연중 진행 - 과태료 부과 의뢰 3건 - 고발 1건	
	○ 각 부서에 제도개선 통보	29건	- 2017년 15건 - 2018년 14건(8.29. 현재)	

성명(직급) 임용기간	활동 실적 <2017.01.01.~2018.8.27.>			
	제목	건수	실적	비고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 청렴시민감사관 감사참여 활동	336건	- 336개 기관 및 학교 감사 참여 : 특정감사, 종합감사, 민원감사 참여	검토 및 결재
	○ 청렴시민감사관협의회 개최, 임 원 회의 및 연수 실시	월1회	- 매월 1회 실시	
	○ 집합 교육 실시	연 3회	- 집합교육 및 워크숍 실시 3회 - 신규 위촉 청렴시민감사관 교육 실시 1회	
	○ 2017년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보고서 발간	1건		
	○ 재임용 및 신규 임용		- 2017년 평가 실시, 재임용(8인), 심사위 원회 구성, 신규 위촉(5인) - 2018년도 8~9월 진행 중	
	기타			

성명(직급) 임용기간	2018 활동 실적 <2018.4.13.~2018.8.27.>			비고
	제목	건수	실적	
<b>차태정</b> (시간선택제 임기제가급)  2018.4.13 ~ 2018.8.27. 현재	청렴시민감사관 임원회의 및 연수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체험학습 봉사활동 관련 출결사항 실지감사 요령 및 사례</li> <li>◦ 학교법인 수익용재산 관련</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시도민감사관 협의회 병행 실시</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도 대상 학생 지도 감사 사례</li> <li>◦ 사립학교 인사 운영에 관한 감사 결과</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생활선도 지도분야 및 수행 평가</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 기본재산 감사방향</li> <li>◦ 학생 출결현황 특정감사 계획</li> </ul>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 개최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시도민감사관 및 실무자</li> <li>◦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사례 소개 및 활동방향</li> <li>◦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사례</li> <li>◦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시도민감사관 운영 현황 소개</li> <li>◦ 공공기관 시민감사관 운영사례 소개</li> <li>◦ (청렴)시도민감사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 협의</li> </ul>	
	2017년 청렴시민감사관 활동보고서 홍보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교육청 홈페이지 게시</li> <li>◦ 전국 시도교육청 시민감사관 협의회에서 배포</li> </ul>	
	청렴시민감사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 9. 30. 자 임기 만료자 재위촉 여부 평가</li> <li>- 평가자 : 감사관실 팀장 및 교육지원청 감사팀장, 상근시민감사관</li> </ul>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계획 수립	1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기만료자 및 공석인 시민감사관 재위촉과 공개모집</li> </ul>	
	서울미동초등학교 민원조사 재심의 건 처리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체험학습 부적정 운영</li> <li>◦ 불문경고 1명, 주의 2명</li> </ul>	
	중평중학교 민원조사 감사실시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안전사고 처리 부적정</li> <li>◦ 기관주의 1건, 주의 2건</li> </ul>	
	서울남부초등학교 민원조사 처리	1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 및 도장공사 부적정 민원조사</li> <li>◦ 적정으로 조사</li> </ul>	
	동대부중학교 특정감사 참여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교원 채용 등 인사 조사</li> </ul>	
	대신고등학교 특정감사 참여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교원 채용 등 인사 조사</li> </ul>	
	항공비즈니스고 특정감사 참여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교원 채용 등 인사 조사</li> </ul>	
	선화예고 특정감사 참여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 교원 채용 등 인사 조사</li> </ul>	
교장공모제 특정감사 참여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교장 관련 남부교육지원청 감사 참여</li> </ul>		
2018년 하반기 특정감사 준비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실태</li> <li>◦ 고등기술학교 등에 대한 학생 출결 실태</li> </ul>		

성명(직급)	활동 실적<2017.01.01.~2018.8.27.>			
근무기간	제목	건수	실적	비고
이득형 (시간선택제 임기제나급)  2017.01.01 ~ 2018.8.27. 현재	송곡관광고 교장 횡령 민원조사		- 파면 1	조사 보고서 작성
	송곡여고 외 2개교 급식중단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한성여고 LED칠판구매 민원조사		- 정직 1, 감봉 1	"
	혜성여고 수능출제출장 불허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봉래초교 옥상방수공사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2	"
	방배중 교원복무위반 민원조사		- 주의 2	"
	항공비지니스고 교원복무 등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2	"
	신동신 평생교육시설 학사 운영 민원조사		- 평생교육과 조사결과 통보	"
	신동신 평생교육시설 교목 보수 지급 민원조사		- 평생교육과 조사결과 통보	"
	경기초 교원채용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송곡여고/송곡관광고/송곡고 교감연수 대상자 선정 민원조사		- 불문경고 1, 견책 1, 경고 3	"
	용화여고 과학중점반 운영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중대부고 교원복무 민원조사		- 고발 3	"
	세검정초 교원복무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동대부속중 교원채용 민원조사		-	진행중
	선화여고 입시부정 민원조사		- 합격취소 1, 경고 1, 주의 2	"
	서일노(이점희) 수익사업 민원조사		- 경고 9	"
	대신고 교원채용 민원조사		-	진행중
	항공비지니스고 교원채용 민원조사		-	진행중
	진명여고 교감연수대상 선정 민원조사		- 견책 1, 경고 1, 주의 1	"
	장안중 석면공사 민원조사		- 주의 1	"
	문일중 교원인사위 운영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1	"
	문창중 행정실장 민원조사		- 경고 1	"
	혜성여고 정교사 채용 민원조사		- 파면 1, 해임 1, 정직 1, 감봉 1, 견책 1	"
	영훈학원 및 경영학교 셀프교장 채용 등 민원조사		- 경고 2, 주의 2	"
	광남고 프로젝터 수의구매 민원조사		- 기관주의	"
	서울미술고 수업료 등 민원조사		- 견책 1, 경고 1, 주의 1	"
	동국대부속고 교원채용 민원조사(1)		- 정직 1, 합격취소	"
	동국대부속고 교원채용 민원조사(2)		- 처분 없음	"
	신목초 개인정보 유출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3	"
	경희중 교감연수대상 선정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남대문중 예산유용 민원조사		- 불문경고 1	"
	정OO 변호사 채용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송곡여고 행정실장 진정 민원조사		- 정직 1, 불문경고 1, 경고 1	"
	혜성여고 수능출제출장 불허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서울공고 용접기 구매 민원조사		- 경고 1	"
	이태원초 학생 미인솔 민원조사		- 기관주의	"
	서초중 학교폭력 민원조사		- 처분 없음	"
	서초중 학운위원 진정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2	"
	구로초 돌봄교실 간식비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2	"
	신천중 학교폭력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1	"
방배중 학교폭력 민원조사		- 경고 1, 주의 1	"	
덕의초 교원복무 민원조사		-	진행중	
환일중 공익제보교사 탄압 민원조사		- 징계취소 요구	"	
대명중 시험관리수당 민원조사		- 권익위 제도개선	"	
남대문중 교감 카드깡 민원조사		- 불문경고 1	"	
인강학교 교장 갑질 민원조사		-	진행중	
유아교육 장학사선발 민원조사		-	진행중	
아주중 학교폭력처리 실태 민원조사		- 경징계 2, 경고 2, 주의 1	진행중	

## 2. 비상근 시민감사관 업무실적

성명 위촉기간	분야	2017년 업무실적	2018년 업무실적	비고
박동명 2016.10.1.~2018.9.30.	회계	방배중 외 9개 학교	-	
박명순 2016.10.1.~2018.9.30.	회계	광신고 외 6개 학교	-	
성부용 2016.10.1.~2018.9.30.	회계	남대문중 외 12개 학교	경기초 외 15개 학교	
조남석 2016.10.1.~2018.9.30.	회계	배문고 외 3개 학교	은혜초 외 4개 학교	
김희규 2016.10.1.~2018.9.30.	시설	-	-	
박태삼 2016.10.1.~2018.9.30.	시설	은정초 외 7개 학교	충무초 외 1개 학교	
김창현 2016.10.1.~2018.9.30.	학사	-	경신중	
김형숙 2016.10.1.~2018.9.30.	학사	혜원여중 외 19개 학교	목동초 외 13개 학교	
박상준 2016.10.1.~2018.9.30.	학사	백운중 외 22개 학교	대진여고 외 14개 학교	
박형채 2016.10.1.~2018.9.30.	학사	양재초 외 3개 학교	대곡초 외 11개 학교	
박종휘 2016.10.1.~2018.9.30.	학사	직속기관 1 정릉초 외 26개 학교	직속기관 1 금성초 외 15개 학교	
변형민 2016.10.1.~2018.9.30.	학사	경북비즈니스고 외 26개 학교	진관고 외 24개 학교	
양성구 2016.10.1.~2018.9.30.	학사	혜성여고 외 26개 학교	신정여상 외 16개 학교	
이부영 2016.10.1.~2018.9.30.	학사	옥수초 외 7개 학교	서울미술고외 13개 학교	
조병래 2017.10.1.~2019.9.30.	회계	성보고 외 11개 학교	한울중 외 2개 학교	
유재중 2017.10.1.~2019.9.30.	회계	직속기관 1 불광중 외 20개 학교	직속기관 1 우암초 외 13개 학교	
장원택 2017.10.1.~2019.9.30.	회계	동도중 외 6개 학교	대성고	
박은경 2017.10.1.~2019.9.30.	회계	지역청 1 정화여상 외 5개 학교	-	
김예희 2017.10.1.~2019.9.30.	회계	송곡관광고 외 5개 학교	영파여고	
문수남 2017.10.1.~2019.9.30.	시설	직속기관 2 명덕외고 외 37개 학교	직속기관 2 삼성고 외 17개 학교	
이종식 2017.10.1.~2019.9.30.	시설	봉래초 외 2개 학교	동작관악고	
조영원 2017.10.1.~2019.9.30.	학사	대신중 외 30개 학교	염강초 외 15개 학교	

성명 위촉기간	분야	2017년 업무실적	2018년 업무실적	비고
김영숙 2017.10.1.~2019.9.30.	학사	서울미술고 외 1	서울미술고	
박기호 2017.10.1.~2019.9.30.	학사	번동중 외 3개 학교	금천초 외 19개 학교	
윤석만 2017.10.1.~2019.9.30.	학사	문래초 외 1개 학교	개웅초 외 15개 학교	

[별첨2]

## 시·도 교육청별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운영 규정

교육청 구분	청렴시민감사관, 시(도)민감사관, 주민감사관			옴부즈만	
	조례	규칙	규정(훈령)	규칙	규정(훈령)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
대구광역시		○ (명예감사관)			○
인천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	
강원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도민감사관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에서 외부전문가의 감사 참여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감사관 운영 규정」으로 학부모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음.